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481
----------	-------

발의연월일 : 2026. 4. 21.

발 의 자 : 김소희·김기현·박준태
조승환·박덕흠·이헌승
우재준·조정훈·이달희
성일중·조배숙·김선교
김상훈·김미애·이종배
김기웅·안상훈·김승수
강명구·엄태영·윤영석
김재섭·김예지·권영진
서일준 의원(2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 가뭄, 산불 등 기후재난의 발생이 빈번해지고 강도가 점차 강해짐에 따라,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한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은 기후위기 대응 전략 수립에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으며, 세계기상기구(WMO)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등 국제사회는 보다 정교한 기후변수 관측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음.

또한, 기후변화가 미치는 물리적 영향 조사·연구 결과 등 기후변화 실태 및 미래 전망과 영향정보를 기반으로 한 범정부 차원의 기후위

기 감시·예측 체계 강화 및 기후위기 대응 정책 수립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상청장이 수집·분석·생산해야 하는 기후·기후변화 감시 정보에 ‘핵심기후변수’와 ‘기후영향인자’를 포함하고(안 제7조제1항제4호 신설), 기후변화에 대한 영향관계 조사·연구의 범위를 홍수, 가뭄, 산불 등 사회 전 분야에 미치는 물리적 영향과 관련된 기후영향인자의 특성을 정밀하게 조사·연구하도록 확장하고자 하며(안 제15조제1항), 관계 기관 등이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와 영향관계 조사·연구 결과를 관련 기후위기 대응 정책에 우선적으로 활용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16조제1항).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참여하는 ‘기후위기감시예측정책협의회’를 구성·운영(안 제16조의3 신설)하여 국가 기후위기 감시·예측 체계를 강화하고, ‘지역 기후변화조사활용센터’의 설치·운영(안 제16조의4 신설) 근거를 마련하여 기후위기 대응 계획 수립의 전 과정(수립-분석-점검-환류)에 참여하여 지역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핵심 거점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자 함.

이를 통해 기후위기 감시·예측 역량 강화를 통한 과학적 정책 기반을 확보하고, 범정부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 수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함으로써 국가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하려는 것임.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세계기상기구 등 국제기구가 정하는 분야별 핵심기후변수 및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정하는 기후영향인자

제15조제1항제1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사. 기후변화가 홍수, 가뭄, 산불, 보건, 에너지, 식량, 생태계 등에 미치는 물리적 영향과 관련된 기후영향인자 특성

4. 이상기후, 극한기후 등 기후변화에 미치는 인위적 영향과 발생원인

법률 제21121호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공할 수 있다”를 “제공할 수 있고, 제공받은 기관의 장은 기후위기 대응 정책 수립 및 대책 이행 등에 우선 활용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제공을”을

“제공과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관련 계획 또는 대책의 검토를”로, “있다”를 “있고,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관련 자료를 기상청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3항) 중 “제1항에 따른 정보”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와 검토 의견”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4항) 중 “제공과 제3항에”를 “제공,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검토 의견의 요청과 제공, 제5항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 등을 활용하여 기후위기 대응 계획 또는 대책 등을 수립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보 활용의 적절성 등에 대한 검토를 기상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검토를 요청받은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계획 또는 대책 등에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와 제15조에 따른 조사·연구 결과가 적절하게 활용되고 기후변화의 물리적 영향과 관련된 기후영향인자 등이 충실하게 고려되고 반영되었는지 등을 검토하고 의견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검토 의견을 관계되는 기후위기 대응 계획 또는 대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장에 제16조의3 및 제16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3(기후위기감시예측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 ① 기상청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기후위기감시예측관리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운영하

고 기후위기 감시 및 예측에 관한 업무를 총괄·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참여하는 기후위기감시예측정책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정책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정책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정책협의회의 위원장은 기상청 차장으로 하고, 정책협의회의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국장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정책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상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⑤ 정책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협의한다.

1. 국가적 기후위기 감시·예측 체계 강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기후위기 감시·예측 정보의 표준 체계에 관한 사항

3. 기후위기 감시·예측 정보의 수집·관리·공동활용에 관한 사항

4. 제15조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 관련 대책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5.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와 제15조에 따른 조사·연구 결과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 반영 점검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6. 제16조제5항에 따라 실시하는 실태조사 결과의 분석 및 환류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정책협의회는 제5항의 협의사항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 및 사전 조정을 위하여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 분야별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협의회 및 분야별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4(지역 기후변화조사활용센터 설치·운영 등) ① 기상청장은 지역별 기후변화 특성과 영향을 체계적으로 감시하고 예측하며,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의 실효성 있는 기후위기 대응 계획 또는 대책 수립과 이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기상청 또는 기상지청에 지역별 기후변화조사활용센터(이하 “지역 기후변화조사활용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 기후변화조사활용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할구역에 대한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를 기반으로 기후변화 추세 및 전망에 대한 조사 및 분석
2. 관할구역에 대한 기후변화의 물리적 영향과 관련된 기후영향인자 조사·연구 및 특성 등에 대한 분석
3.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조사·연구 및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관할구역의 기후위기 대응 계획 또는 대책 수립 및 이행 과정에 참여, 검토, 분석, 점검, 환류 등

4. 관할구역의 재생에너지의 보급·확대를 위한 지역별 기후·기후 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 제공
 5. 관할구역의 실효성 있는 기후위기 대응 정책 마련 및 이행에 필요한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
 6. 그 밖에 기상청장이 실효성 있는 지역별 기후위기 대응 정책 수립과 이행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기상청장은 지방자치단체장 등 관계 기관의 장과 협력하여 지역 현장의 기후위기를 효율적으로 감시하고 예측하며 대응하기 위하여 지역 기후변화조사활용센터에 관할구역의 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지역 기후변화조사활용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지역 기후변화조사활용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고, 제3항에 따른 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기후·기후변화 감시 정보의 생산 등) ① 기상청장은 기후변화 실태를 파악하고 기후변화 대응 관련 대책의 효과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후·기후변화 감시 정보를 수집·분석·생산하여야 한다.</p> <p>1. ~ 3. (생략)</p> <p><u><신 설></u></p> <p>②·③ (생략)</p> <p>제15조(기후위기 대응 관련 대책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 ① 기상청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0조제2항제5호, 제11조제2항제3호, 제3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제40조제1항, 제41조제1항에 따른 정부, 지방자치단</p>	<p>제7조(기후·기후변화 감시 정보의 생산 등) ① ----- ----- ----- -----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세계기상기구 등 국제기구가 정하는 분야별 핵심기후변수 및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정하는 기후 영향인자</u></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15조(기후위기 대응 관련 대책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 ① - ----- ----- ----- ----- -----</p>

체 및 공공기관의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대책 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후변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조사·연구를 할 수 있다.

1. 기후변화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영향관계

가. ~ 바. (생략)

<신설>

2.·3. (생략)

<신설>

4. (생략)

② (생략)

법률 제21121호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6조(기후위기 대응 관련 대책 지원 등) ① 기상청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계획 또는 대책 등의 수

-----.

1. -----

가. ~ 바. (현행과 같음)

사. 기후변화가 홍수, 가뭄, 산불, 보건, 에너지, 식량, 생태계 등에 미치는 물리적 영향과 관련된 기후영향인자 특성

2.·3. (현행과 같음)

4. 이상기후, 극한기후 등 기후변화에 미치는 인위적 영향과 발생원인

5. (현행 제4호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법률 제21121호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6조(기후위기 대응 관련 대책 지원 등) ① -----

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와 제15조에 따른 조사·연구 결과를 계획 또는 대책 등의 수립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1. ~ 5. (생략)

<신설>

<신설>

----- 제공할 수 있고,

제공받은 기관의 장은 기후위기 대응 정책 수립 및 대책 이행 등에 우선 활용하여야 한다.

1. ~ 5.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정보 등을 활용하여 기후위기 대응 계획 또는 대책 등을 수립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보 활용의 적절성 등에 대한 검토를 기상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검토를 요청 받은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계획 또는 대책 등에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와 제15조에 따른 조사·연구 결과가 적절하게 활용되고 기후변화의 물리적 영향과 관련된 기후영향인자 등이 충실하게 고려되고 반영되었는지 등을 검토하고 의견을 관계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 등의 원활한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 등이 지원 대상 계획 및 대책에 활용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활용실적과 계획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정보 등의 제공과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검토 의견을 관계되는 기후위기 대응 계획 또는 대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
----- 제공과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관련 계획 또는 대책의 검토를 -----

있고,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관련 자료를 기상청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⑤ -----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와 검토 의견 -----

⑥ ----- 제공,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검토

필요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신 설>

의견의 요청과 제공, 제5항에

-----.

제16조의3(기후위기감시예측정책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 ①

기상청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기후

위기감시예측관리체계를 효율

적으로 구축·운영하고 기후위

기 감시 및 예측에 관한 업무

를 총괄·지원하기 위하여 관

계 중앙행정기관이 참여하는

기후위기감시예측정책협의회

(이하 이 조에서 “정책협의회”

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정책협의회는 위원장을 포

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

성한다.

③ 정책협의회의 위원장은 기

상청 차장으로 하고, 정책협의

회의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

관의 국장급 또는 이에 상당하

는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정책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상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⑤ 정책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협의한다.

1. 국가적 기후위기 감시·예측 체계 강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기후위기 감시·예측 정보의 표준 체계에 관한 사항

3. 기후위기 감시·예측 정보의 수집·관리·공동활용에 관한 사항

4. 제15조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 관련 대책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5.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와 제15조에 따른 조사·연구 결과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 반영 점검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6. 제16조제5항에 따라 실시하는 실태조사 결과의 분석 및 환류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

<신 설>

고 인정하는 사항

⑥ 정책협의회는 제5항의 협의 사항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 및 사전 조정을 위하여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 분야별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협의회 및 분야별 실무협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4(지역 기후변화조사활

용센터 설치·운영 등) ① 기상청장은 지역별 기후변화 특성과 영향을 체계적으로 감시하고 예측하며,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의 실효성 있는 기후위기 대응 계획 또는 대책 수립과 이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기상청 또는 기상지청에 지역별 기후변화조사활용센터(이하 “지역 기후변화조사활용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 기후변화조사활용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할구역에 대한 기후·기후 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를 기반으로 기후변화 추세 및 전망에 대한 조사 및 분석
2. 관할구역에 대한 기후변화의 물리적 영향과 관련된 기후영향인자 조사·연구 및 특성 등에 대한 분석
3.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조사·연구 및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관할구역의 기후위기 대응 계획 또는 대책 수립 및 이행 과정에 참여, 검토, 분석, 점검, 환류 등
4. 관할구역의 재생에너지의 보급·확대를 위한 지역별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 제공
5. 관할구역의 실효성 있는 기후위기 대응 정책 마련 및 이행에 필요한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
6. 그 밖에 기상청장이 실효성 있는 지역별 기후위기 대응 정책 수립과 이행 지원에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기상청장은 지방자치단체장 등 관계 기관의 장과 협력하여 지역현장의 기후위기를 효율적으로 감시하고 예측하며 대응하기 위하여 지역 기후변화조사활용센터에 관할구역의 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지역 기후변화조사활용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역 기후변화조사활용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고, 제3항에 따른 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